



# 중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제도 시범시행안 발표

이소양 연구원

여약

2018년 1월 8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생명보험 정산거래제도 시범시행에 관한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동 관리방법은 시범사업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참여자 및 거래 가능한 보험상품, 정산회사의 업무처리방식 및 위험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함. 또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소권 부여, 오도 가능한 홍보 행위 금지, 정산거래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명시함

■ 2018년 1월 8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생명보험 정산거래제도 시범시행에 관한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생명보험 정산거래는 정산회사가 현금을 지불하고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매입, 보험회사에게 잔여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그 대가로 사망보험금 수령권을 획득하는 거래임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해지 시의 환급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받아 노후자금이나 질병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불투명한 거래로 인한 보험사기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보험계약 유동성 증가로 만기가 긴 생명보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앞서 2014년 8월 중국 정부는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대보험서비스의 발전에 관한 의견”<sup>2)</sup>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범 시행될 생명보험 정산거래제도는 보험산업 선진화 추진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세제혜택 제공, 전문보험회사 및 상호보험회사의 확대, 보험거래소 설립, 신지급여력제도(C-ROSS) 도입 등의 방안들을 발표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월 26일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추후 생명보험 정산거래에 관한 시범사업을 2년 동안 시행할 계획임

1)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8. 1), “人身险保单贴现业务是试点管理办法(征求意见稿)”  
 2) 国务院(2014. 8), “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若干意见”. 중국 정부는 “현대보험서비스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2020년까지 보험시장의 보험밀도를 3,500위안, 보험침투도를 5%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함

■ 동 관리방법은 시범사업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참여자 및 거래 가능한 보험상품, 정산회사의 업무처리방식 및 위험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생명보험 정산거래 참여자는 주로 보험계약자, 정산회사, 투자자 및 보험회사가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및 의료기관 등이 정산회사의 필요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정산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sup>3)</sup>를 받아야 정산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에 투자할 수 있음
- 정산거래가 가능한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으로 한정되고 있음
  -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종목으로 한정되는 이유는 계약자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이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 후 2년 이내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임
- 정산회사는 보험계약자와 정산계약서를 체결하는 현장에서 정산계약서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 보험계약자 동意的 의사표시를 녹화·녹음하며 정산계약서의 체결 날짜, 정산거래의 대상과 금액, 피보험자의 예상 생존기간 등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저장해야 함
  - 정산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정산계약서 체결 현장에 대한 녹화·녹음 파일 및 정산계약 관련 정보의 기록 기간은 보험계약 종료 날짜부터 5년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음
- 정산회사는 위험관리에 있어서 실제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정산업무 프로세스 및 계리모형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 시 재보험회사와 협력해 정산거래에 따른 위험에 대해 분산시킬 수 있음

■ 또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소권 부여, 오도 가능한 홍보 행위 금지, 정산거래에 관한 정보공개 등을 명시함

- 보험계약자는 정산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나 보험계약 정산자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방적으로 정산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 정산자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함
- 정산회사, 보험회사 및 투자자는 보험계약자가 정산계약을 체결하도록 부실·허위·과장 홍보를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산회사는 정산과정에서 보험계약자를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당기 보험계약의 현재가치, 특별계좌의 잔액, 해지환급금, 정산자금의 평가가치, 정산 전후 권리 및 의무의 변화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kiri

3)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는 정산회사는 5억 위안 이상의 납입자본금, 보험회사의 업무시스템 및 보험계약 관리 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사이버정보 보안시스템,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등이 있어야 됨